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6. 22 선고 2021가단1075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용환

피고B

변론 종결2022. 5. 25.

판결 선고2022. 6. 22.

주 문

1. 원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7. 접수 제281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양수금 채권

1) D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채권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C에게 아래와 같이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

- (1) 2013. 12. 6. 대출원금 2,000,000원, 이율 연 26%, 연체이율 38%
- (2) 2014. 4. 3. 대출원금 2,000,000원, 이율 연 29.9%, 연체이율 연 34.9%
- (3) 2014. 8. 5. 대출원금 3,000,000원, 이율 연 29.5%, 연체이율 연 34.5%
- (4) 2014. 9. 4. 대출원금 2,000,000원, 이율 연 29.5%, 연체이율 연 34.5%
- (5) 2015. 2. 24. 대출원금 3,000,000원, 이율 연 28.5%, 연체이율 연 34.5%
- (6) 2015. 4. 10. 대출원금 5,000,000원, 이율 연 29.9%, 연체이율 연 34.9%

나) D은 C이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7. 7. 7.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34153호로 C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라) 2021. 4. 16.을 기준으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양수금 판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9,649,224원 및 그 중

- 금 3,836,429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 금 2,203,896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5%의,
- 금 2,063,943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5%의,
- 금 1,467,471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5%의,
- 금 616,416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 금 205,453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2) E로부터의 양수금 채권 가) E 주식회사는 2014. 7. 21. C에게 2,000,000원을 이율 연 34.89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이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E는 2016. 11. 9. F 주식회사에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0.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차전3216호로 C을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C의 이의 없이 2020. 8. 25. 확정되었다.

라) 2021. 4. 16.을 기준으로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6,727,910원 및 그 중

금 2,350,081원에 대하여 2021.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3) 따라서 원고는 2021. 4. 16.을 기준으로 C에 대하여 61,546,880원(= 29,649,224원 + 6,727,910원)의 양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1)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외에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2020. 7. 6.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7.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0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실행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각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C이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와 같이 채무자인 C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1) 앞서 본 것과 같이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C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가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해주고, C에 대한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하여 준 후, C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의 형사합의금이나 C이 부담하는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약 52,000,000원 이상의 금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전경훈

별지